



컨베이어 구동장치 점검 중 추락



사업장 내 파쇄용 폐비닐 이송공정에서 피해자가 신규 설치된 컨베이어를 시운전하기 위해 약 3m 높이의 컨베이어 상부에서 구동장치 등을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 실시
-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 착용

안전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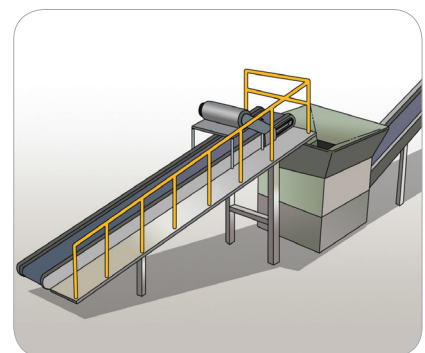
TIP

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설치

-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 등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

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

-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(높이 약 3m) 등에서 청소, 점검 등의 작업수행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



발판과 안전난간을 끝까지 설치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




컨베이어 구동장치 점검 중 추락

높은 장소의 컨베이어 구동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세요!

